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재선임)에 따른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임과 같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

1. 공시사유		선임
2. 임원내역	성명	이재은
	직위	상무
	담당업무	위험관리책임자
3. 선임일자	선임일	2025년 9월 6일
	임기	3년
4. 자격요건 적합여부		적합